

광주지방법원 2024. 10. 18 선고 2023나8771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24. 10. 18 선고 2023나87715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10. 12 선고 2023가소212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피항소인 B

변론 종결 2024. 9. 6.

판결 선고 2024. 10. 18.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10. 12. 선고 2023가소2129 판결

주문

-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78,484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1,778,48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3. 8. 4. 원고 회사를 설립한 후 2016. 8. 14.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2016. 8. 15.부터 2019. 8. 15.까지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임하였다.

원고 회사는 2014. 2. 28. 아래와 같은 상해보험(피보험자 : 피고, 만기수익자 : 원고 회사, 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함)에 가입한 뒤 2016. 11. 30.까지 월 보험료 50만 원씩을 납입하였다가, 2016. 12. 6.경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2016. 12. 6. 해지환급금 15,221,516원을 지급받았다.

임의단체명	
보험기간 2014.02.28. ~ 2026.02.28.	납기/만기 12년납 12년만기
계약자 (주) A	(사업자등록번호 1)
피보험자 B	(주민등록번호1)
기업체 임원	00210
우편물수령지 지점	E 전라남도 순천시 F
계약상태 유지	종결상태해지
최종납입일도 2016.11	34 회
최종납입일 2016.11.30.	모집담당 G
증권발행 2014.03.03.	상위점포 은행순천
영수증발행월도	집금 계약점포 방카영업부
수금관리방법 직원수금	계약담당 방카영업부39팀
수금관리형태 개별관리	G 은행 H 금융센터 사무실
자동이체청구일 2016.11.30.	1)(전화번호
	휴대폰
	차량번호
	중도금수령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가 피고 개인을 위하여 이 사건 보험에 가입 후 34개월 동안 월 보험료 50만 원을 납입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해지환급금을 공제한 금액 1,778,484원(= 1,700만 원(= 50만 원 × 34개월 - 해지환급금 15,221,516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상법 제33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상법 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가 아닐 경우, 이사가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최대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내렸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여 이사로서 통상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면, 비록 사후에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0521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다24527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 회사 명의로 가입된 이 사건 보험은 그 피보험자가 당시 대표이사이던 피고 명의로 되어 있고, 원고 회사가 결과적으로 보험료 납입 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해지환급금만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나, 피고가 피고의 개인적 목적만을 위하여 이 사건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월 납입 보험료 상당의 원고 회사 자금을 임의사용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보험 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당시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아무런 주장·입증도 없는 점, 피고 주장의 보험계약 체결 이유(피고는 원고 회사의 운영자금을 G은행에서 대출받을 당시 은행직원의 권고에 따라 더 낮은 대출이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원고 회사 직원들의 근무 중 재해로 인한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함) 및 만기수익자가 원고 회사로 되어 있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로 인하여 곧바로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행위가 상법

제399조 소정의 임무해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구소인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상현

판사이민수

판사김정숙